

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수출물품의 통관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의 통관에 관한 <u>사무처리지침</u>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전자통관심사”란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<u>심사없이</u>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7. “자율정정”이란 심사나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지 <u>아니한</u> 신고건에 대하여 화주 또는 신고인이 자율적으로 통관시스템을 이용하여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.</p> <p>8. ~ 14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사무처리지침</u>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<u>심사 없이</u>----- -----.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않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8. ~ 14. (현행과 같음)</p>	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</p> <p>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</p>

15. “전자상거래 수출업체”란 제14호에 의한 전자상거래 업체 중에서 수출신고서상 거래구분 15(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)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.

16. · 17. (생략)

제5조(신고인) 수출신고는 관세사, 「관세사법」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, 「관세사법」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(이하 “관세사”라 한다) 또는 수출화주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출신고 및 제출서류) ① (생략)

② 신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신고자료 등을 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수출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 및 해당호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세관장에

15. -----

-----15(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출물품), 17(전자상거래 플랫폼 수출)-----.

16. · 17. (현행과 같음)

제5조(신고인) ----- 수출화주 또는 관세사, 「관세사법」 제17조에 따른 관세법인, 「관세사법」 제19조에 따른 통관취급법인(이하 “관세사등”이라 한다)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,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.

제7조(수출신고 및 제출서류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(별지 제1호서식) 및 해당 호-----

○ 신설된 거래구분 반영

○ 관세법 제242조 규정 반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게 제출하여야 한다.(수출신고서상 신고구분은 '서류제출'로 기재) 다만, 해당 구비서류를 전자이미지로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법 제226조와 「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출물품 : 각 개별법령별 요건확인 서류(단, 수출요건내역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)
2.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: 계약상이 및 재수출조건부 수출 심사에 필요한 서류(다만, 재수출조건부 수출의 경우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)
3.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,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: 각 사실관계 확인 서류

----- 한다. 다만, -----

그렇지 않다.

1. ----- 「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」 제7조제1항-----
-물품: -----

2. -----

----- 물품: -----

3. -----

----- 물품: -----

- 불필요 규정 삭제
- 인용 고시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
(다만, 단순반복 사용을 위한 포장용기는 제외)

4.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서류제출대상으로 통보된 물품 : 제11조에 따른 수출신고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출화주가 직접신고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서(별지 제1호 서식)를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「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」 제52조(신고인 관리) 및 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(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 신청)에 따라 전자방식에 의한 수출입신고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부호(ID)를 부여 받아야 한다. 다만,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업체(전년도 수출실적 하위 50% 해당

4. -----
----- 물품: -----

③ ----- 직접 신고하는 -----

-----(별지 제1호서식)-----
-----.

④ -----

-----「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4조(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이용신청 및 승인)-----

-----<단서 삭제>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인용 고시 현행화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수출신고지원센터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
업체 또는 미화 80,000이하 수출업체)는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한국무역협회(본부, 지부 등 포함) 등에 설치된 ‘수출신고지원센터’의 전산설비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⑥ 제1항에 따른 수출신고서 작성시 기재요령은 별표의 “수출신고서 작성요령”에 의한다.

⑦ 신고인은 제2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사본(FAX, COPY)을 제출할 수 있다. 서류제출대상 중 선적일정 촉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FAX로 제출하여 우선통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익일 세관근무시간내에 정식신고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선적일정 촉박의 사유로 인한 우선통관은 선박회사 등의 선적일정표 기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확인된 경우에만 한한다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작성시 -----

-----.

⑦ -----
사본을 제출할 수 있다. -----

----- 팩스 -----
----- 다음
날 세관근무시간 내에 -----

----- 선적일정표, 그 밖에 -----
-----.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제7조의2(무역서류의 전자제출) ① 「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」로 공인받은 수출업체가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(ERP시스템)을 활용하여 「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」로 공인받은 신고인을 통하여 수출신고하는 때에는 법 제327조 제2항에 의한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송품장을 제출할 수 있다.

②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송품장은 수출화주의 전자서명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) 및 인증서(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말한다)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송품장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[별지 제12호 서식]의 무역서류 전자제출 신청(승인)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

제7조의2(무역서류의 전자제출) 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-----

-----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-----

-----.

② -----
-----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2호-----
-----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 제6호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별지 제12호 서식의 -----

○ 문장부호 및 용어 정비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문장부호 정비

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「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」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
2. (생략)

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

① 법 제243조 제4항에서 “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”란 수출물품을 적재하는 공항만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.(이하 ‘보세구역 등’ 이라 한다)

1. ~ 3. (생략)

4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중 세관장으로부터 장치장소부호를 부여받은 곳

② 「관세법 시행령」(이하 ‘영’이라 한다) 제248조의2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등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여야 하는 물

-----.

1.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-----

2. (현행과 같음)

제7조의3(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)

① 법 제243조제4항-----

----- “보세구역 등” -----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-----

② ----- “영”이라 -----

○ 문장부호 및 용어 정비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문장부호 통일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문장부호 통일

품은 [별표 11]과 같다.

③ 영 제248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대한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[별표]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.

④ ~ ⑤ (생략)

제11조(심사) 심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.

1. 신고서를 [별표] “수출신고서 작성요령”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였는지 여부

2. ~ 4. (생략)

5. 그 밖에 수출신고수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(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) ① 법 제106조 및 법 제106조의2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수출신고와 관련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하는 세관공무원은 해당 물품이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을 심

----- 별표 11-----.

③ -----

----- 별표의 수
출신고서 -----.

④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심사) -----
-----.

1. -----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
령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----- 수출신고수리 여부-----

제12조(계약상이 수출신고서의 처리) ① -----

----- 않았음을 -----

○ 문장부호 정비

○ 문장부호 정비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 반영

사하고, 수출신고필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수출신고필증 : 수입신고번호 xxxxxx-xx-xxxxxxxx호(xx.xx.xx 수리)의 전량(또는 일부 xx개)을 법 제106조 계약상이로 수출 또는 법 제106조의2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

② 계약상이 수출신고물품이 「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28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에 대해 수출신고수리시 또는 보세공장 재반입시에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.

제13조(분석의뢰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른 분석의뢰시에는 분석의뢰 사실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, 분석한 물품의 분석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수출신고필증: -----

② -----

----- 위해서는 -----
----- 수출신고수리시 -----
----- 재반입시에도 -----
-----.

제13조(분석의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분석의뢰시에는 -----

----- 않는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.

제15조(통관보류) 세관장은 심사결과 수출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관을 보류한 경우 이를 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

1. 신고서 기재사항 또는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
2. (생략)
3. 범칙혐의로 자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고발의뢰한 경우
4. 그 밖에 통관심사결과 신고수리의 요건을 구비하는데 장시일이 소요되는 경우

제16조(검사대상 선별) ① (생략)

② 수출신고물품에 대한 검사대상물품의 선별은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-----.

제15조(통관보류) -----

----- 입력한다.

1. ----- 신고시 -----
----- 미비하여 -----

2. (현행과 같음)
3. ----- 진행 중 -----

4. -----
----- 오랜 시일 -----

제16조(검사대상 선별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-----.

○ 문장부호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은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대상으로 선별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최근 2년간 법 위반사실 및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 “환특법”이라 한다.) 위반사실이 없는 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

2. ~ 4. (생략)

5. 「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“종합인증우수업체”로 공인된 업체

제17조(물품검사) ① (생략)

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신고수리 후 적재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

③ -----

-----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-----
----- 않을 -----.

1. ----- 「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-----
-----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수출입 안전 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된 업체

제17조(물품검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 적재지검사 -----
-----.

③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고시 변경사항 반영

○ 정의용어 사용으로 의미 명확화

○ 보세공장 수출물품의 신속한 통관 지원 및 정의

이나 반송물품, 계약상이물품,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,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,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④ ~ ⑧ (생략)

제17조의2(검사대상의 통보) 세관장은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하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, 적하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. 다만,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.

제17조의3(검사대상의 확인) 적하목록 제출자는 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」 제43조에 따라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때 적하목록상의

----- 운
송 수출물품,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
물품 등은 신고지검사-----.

④ ~ ⑧ (현행과 같음)

제17조의2(검사대상의 통보) -----
「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
에 관한 고시」 제43조-----
-- 적재화물목록이 -----
----- 적재화물목록 제출자

----- . -----

-----.

제17조의3(검사대상의 확인) 적재화물목
록 제출자-----

----- 적재화물목록을 -----

용어 사용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

○ 용어 정리

수출물품이 제17조에 따라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4(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) ① (생략)

② 적하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하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, 해당 보세구역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.

<조항 이동>

제17조의5(검사생략) 세관장은 제17조의2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

적재화물목록상의-----

-----.

제17조의4(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자-----
----- 적재화물목록상 -----
----- 보세구역 내 -----

-----.

③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,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제17조의5(검사생략) -----

-----.

○ 용어 정리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검사대상 반입보고 사항으로 조항 이동 (제52조 제5항 → 제17조의4제3항)

○ 용어 정리

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하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9조(검사 입회) ① 세관장은 물품검사 시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신고인으로부터 입회요청을 받은 때에는 신고인이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, 장소 및 입회가능시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검사 입회를 신청하려는 신고인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입회신청(통보)서 2부를 작성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신청서류는 우편, FAX,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.

③ (생략)

④ 세관장이 검사입회 통보를 하여도 검사일시에 수출화주나 신고인 또는 그

제19조(검사 입회) ① ----- 물품검사 시-----

② -----
별지 제10호서식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소속 종사자가 입회하지 아니한 때에는
장치장소의 관리인 또는 그를 대리하는
소속 종사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한
다.

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(생략)

1.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필증을 전자
적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경우 : 수출신
고서에 세관특수청인을 직접 날인하
여 교부
2. 신고물품의 규격수가 50개를 초과하
여 전산으로 입력하지 않고 신고서 및
신고필증에 상세내역사항을 별도의
붙임서류로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 :
세관특수청인을 전자적으로 날인한
신고필증과 붙임서류의 경계면에 별
표2의 신고서 처리담당자 인장을 날
인하여 교부

② 제26조에 따라 신고서를 정정하는
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필증을 다시

않은

제22조(수출신고필증의 교부) ① (현행과
같음)

1. -----
----- 경우: -----

2. -----

----- 경우: -----
----- 별
표 2-----

②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조문 정비

교부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빙자료를 수출신고정정 승인(신청서)(별지 제2호 서식)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세관장은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적재전 수출신고필증과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을 구분하여 교부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이행 수출신고필증은 출항이 완료된 이후에 교부 한다.

④ 세관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4의 적재지검사건에 대하여 수출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[별표9]의 안내문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출검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시점에서의 안내문의 기재는 생략할 수 있다.

⑤ (생략)

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(영문수출통관증명서)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

-----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출신고정정 승인(신청)서와
-----.

③ -----
적재 전 -----

-----.

④ -----
----- 별표 9 -----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----- 별지 제1호서식에 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문장부호 정비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조문 정비

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,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23조(신고자료의 보관) ① (생략)

② 수출화주는 법 제12조 및 「관세법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

제25조(신고필증의 재교부) ① 신고인과 수출화주는 제22조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교부 받은 신고필증을 다시 교부 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(별지 제7호 서식)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

⑦ (현행과 같음)

제23조(신고자료의 보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영 -----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25조(신고필증의 재교부) ① -----

----- 별지 제7호서식의
수출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-----

○ 제7조의3제2항에서 “영”으로 정의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조문 정비

우에는 그 증빙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

1.·2. (생략)

3.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정하는 경우

가.·나. (생략)

4. 기타 세관장이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만으로 정정내역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·③ (생략)

제32조(선상수출신고) ① (생략)

1.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(SURVEY REPORT)에 의하여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(예: 산물 및 광산물)

2.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(예: 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아니한 상태로 외국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하여

-----.

1.·2. (현행과 같음)

3. --- 각 목-----

가.·나. (현행과 같음)

4. 그 밖에 -----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32조(선상수출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

1. -----

-----예: -----

2. -----

-----예: 국내운항선-----
----- 않은 상태
로 국제무역선-----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용어 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출항하고자 하는 경우)

3. (생략)

② (생략)

1. 법 제14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적재허가를 받은 물품

2. 3. (생략)

③ 제1항에 따라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전에 법 제14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(신청)서를 세관장에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1년 범위내에서 일괄하여 허가할 수 있다.

제33조(현지수출 어패류신고) 어패류를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에 의하여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출 후 대금결제전까지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, 신고서류에 수출실적

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1. 법 제140조제6항 ---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--- 법 제140조제6항 -----
----- 별지 제8호서식-----

제33조(현지수출 어패류신고) -----

○ 법 조항 오류 수정

○ 법 조항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고자료를 전송하여야 한다.

제35조(잠정수량신고·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) 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,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,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5. HS 71류부터 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
- ② (생략)

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

-----.

제35조(잠정수량신고·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) ① -----

-----수출
신고 시-----

----- 수출신고 시-----

----- 별지 제2호서식-----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---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-----

- ② (현행과 같음)

제35조의2(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간이수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조문 정비

출신고) ①·② (생략)

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표12의 작성요령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 신고에 관한 특례) 외국에서 자유무역 지역으로 물품을 반입한 후 사용소비신고 등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하고 해외 개인 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국외로 물품을 반출신고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1)나에 따라 국외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일부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.

제36조(목록통관) ① 영 제246조제4항제1호,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송품장, 별지 제6호 서식의 (검사대상)통관 목록(이하 “통관목록등”이라 한다) 또는 우편물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법 제241조제1항의 수출신고를

출신고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별표 12

-----.

제35조의5(전자상거래 물품의 국외반출 신고에 관한 특례) -----

----- 않
고 -----

-----.

제36조(목록통관) ① 영 제246조제4항제3호 -----
----- 별지 제17호서
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(수리)
서 및 송품장, -----

-----.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

○ 송품장 목록통관 의미 명확화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26조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외교통상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
- 4. · 5. (생략)
- 6. 카타로그, 기록문서와 서류

- 7. · 8. (생략)

<신설>

②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사유(코드) 및 가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7조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6-2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라 한국은행·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첨부서류 없
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외교부-----
- 4. · 5. (현행과 같음)
- 6. 카탈로그-----

- 7. · 8. (현행과 같음)

9. 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대상 물품

② 제1항제8호-----

-----.

③ 「외국환거래법」 제17조 및 「외국환거래규정」 제6-2조제1항제7호라목--

- 부처명 현행화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- 법 제241조 및 제106조의2 반영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
이 신고서에 수출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다.

제37조(통관목록자료 전송) ① 특송업체는 통관목록전송 대상물품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(검사대상)통관목록(이하 “통관목록자료”라 한다)를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전송할 수 있다. 다만, 수출실적 인정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목록자료 기재항목 중 사업자등록번호, 세번부호(HSK 10단위)를 추가로 기재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37조의2(송품장 통관목록자료 전송) 송품장 방식의 목록통관 신고인은 송품장을 별지 제17호 서식의 전자문서로 통관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.

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 ① 세관장은 목록통관 신고물품에 대한 통관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

-----.

제37조(통관목록자료 전송) ① -----

----- (검사대상)통관목록(이하 “통관목록자료”라 한다)을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37조의2(송품장등 전송) -----
----- 별지 제17호서식의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(수리)서 및 송품장을 -----
전송-----.

제38조(처리담당자의 지정 및 검사대상 선별) ① ----- 목록통관신고물품에 -----

○ 맞춤법 오류 수정

- 조문명 조문내용 반영
- 제출서류 명확화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하여 특송업체별, 주기별(예, 주·월별)로 처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통관목록자료로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검사대상선별은 통합위험관리시스템에서 무작위 또는 담당자의 수작업 방식으로 선별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제39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) 심사자는 목록통관 신고물품에 대하여 통관목록등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하며, 통관목록자료에 의한 신고 물품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40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) 검사자는 검사대상물품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 서류에 의하여 현품 검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통관목록자
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) -----
-- 목록통관신고물품-----

한다. 다만, 통관목록등을 전자문서로 신고하는 -----

-----.

제40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) ① ---
----- 검사대상으로 -----

----- 할 수 있다. 다만, 통관목록등을

○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의 구분 명확화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○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의 구분 명확화

○ 중복표현 삭제
○ 조문내용 정리 및 서류

료에 의한 신고물품은 검사대상 통관목록(별지 제6호 서식)을 전산출력하여 현품검사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41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 결과 등록 등) ① 세관장은 통관목록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에 대한 심사·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 통관 목록등 서류에 신고취하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하여 직권 신고취소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(생 략)

③ 세관장은 통관목록등 또는 전자문서 신고물품을 심사·검사한 결과 이상이

전자문서로 신고하는 물품은 신고자료를 ----- 할 수 있다.

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 이 경우, 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여야 한다.

제41조(목록통관신고물품의 심사·검사결과 등록 등) ① ----- 목록통관신고물품-----
----- 않거나 --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목록통관신고물품을 -----

및 전자문서 제출의 구분 명확화

○ 목록통관신고물품 검사생략 규정 마련

○ 조문명 사용 대상 명료화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조문명 사용 대상 명료화

없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목록등에 고무인(별표2, 별표5)을 날인하거나 전산 등록하여 신고수리할 수 있다.

제44조(적하목록에의 같음 등) ① 특송업체 등은 통관목록자료를 전송하여 신고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출항 적하목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. 다만, 통관목록 등 서류제출신고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신고수리물품에 대하여는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제45조(수출물품의 적재) ① (생략)

② 수출자 및 외국무역선(기)의 선(기)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외국무역선(기)에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
----- 별표 2 및 별표 5
에 따른 고무도장을 -----
-----.

제44조(적재화물목록의 같음 등) ① 통관 목록등을 전자문서로 -----
----- 적재화물 목록의 ----- 통관 목록등을 서류로 제출하여 신고수리된
----- 그렇지 않다.

② -----

않는다.

제45조(수출물품의 적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국제무역선(기)의 -----

----- 법 제140조제6항-

----- 국제무역선(기)에 적재해서는 안 된다.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의 구분 명확화

○ 용어 정리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○ 용어 정리

○ 법 조항 오류 수정

○ 용어정리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 5호 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(신청)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.

④ ~ ⑥ (생략)

제46조(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시받은 출국심사 세관공무원은 반출 물품과 대조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때에는 적재일자, 선(기)명, 반출 수량 및 중량을 기재하고 별표6의 고무인을 날인한 후 수출통관시스템에 적재사실을 직접등록하거나 다음날까지 출항지세관 휴대탁송물품의 적재등록 담당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-----

----- 별지 제 5호서식-----

----- 별지 제2호서식-----
-----.
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46조(휴대탁송물품의 적재 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별표 6의 고무도장-----
----- 통관시스템에 -----
----- 다음 날까지 -----
-----.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반영 및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용어 정리

등이 개항에 입항한 경우에는 입항보고서를 확인하여 적재 등록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2. 보세공장에서 신조하여 수출하려는 때

② (생략)

③ 제3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 신고를 하는 경우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적재이행신고로 출항적하목록 제출을 갈음한다.

제50조(수출물품의 분할 적재) 수출자가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적재 기간내에 분할하여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 책임자는 그 사실을 적하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수출화물시스템에 전송하여야 한다.

제51조(동시포장 물품의 적재) ①·② (생략)

③ 선사 등 적하목록 작성책임자는 수

----- 국제항-----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----- 새로 건조하여 -----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출항적재
화물목록 -----.

제50조(수출물품의 분할 적재) -----

----- 적재화물목록
----- 적재화물목록
에 ----- 화물시스템-----
-----.

제51조(동시포장 물품의 적재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적재화물목록 -----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 반영

○ 용어 정리

○ 용어 정리

○ 용어 정리

출신고필증 및 선적요청서 등을 통하여 동시포장 등 여부를 확인하고 동시포장 여부 및 동시포장 개수를 적하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.

제52조(수출신고수리의 취소·관리) ①
통관지 세관장은 매주 월요일(월요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)마다 통관 시스템을 조회하여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기간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 신고인 등에게 적재기간내에 적재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출신고수리를 취소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수출신고수리취소 예정통보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출신고지원센터를 통한 직접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수출신고지원센터로 예정통보서를 송부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 따른 원인규명의 결과 적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원인을 규명할 수

----- 적재화물목록
에 -----.

제52조(수출신고수리의 취소·관리) ① -

----- 다음 날-----

----- 적재기간 내-----
----- 않는 -----
----- 별지 제4호서식-----
-----.

<단서 삭제>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-- 않았거나 -----

- 띄어쓰기 오류 수정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- 수출신고지원센터 미운영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
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

없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은 적재관리 시스템에서 미적재 여부를 확인한 후 수출신고의 수리를 취소하여야 한다. 다만, 영 제25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④ (생략)

⑤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 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,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.

제53조(자체조사 및 고발의뢰) ① 세관장은 수출신고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「관세법」 등 위반혐의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.

1. 수출신고에 있어 품명, 규격, 수량, 가격 등 주요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때
2. ~ 4. (생략)

④ (현행과 같음)

<조항 이동으로 삭제>

제53조(자체조사 및 고발의뢰) ① -----
----- 「관세법」 등

1. ----- 사유 없이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○ 조항 이동 (제52조제5항 → 제17조의4제3항)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5. 제4조에 따른 물품소재지에 물품을
장치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한 때

6. 제17조의2 또는 제17조의3에 따라 적
재지검사대상으로 통보 또는 확인된
물품을 제17조의4에 따른 검사요청을
하지 아니하거나 적재지검사를 받지
아니하고 적재한 때

7. 관세사 등 신고인이 제22조제4항에
따른 신고필증을 발행 교부함에 있어
전산자료와 상이한 신고필증을 발행·
교부한 때

8. 수출신고수리물품을 제45조에 따른
적재기간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

9. 관세사 등 신고인이 P/L 관련 서류
를 해당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년
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때

10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반사항이

5. -----
----- 않고 -----

6. -----

----- 않거나 -----
않고 -----

7. 관세사등 -----

8. -----
적재기간 내----- 않은 --

9. 관세사등 -----

----- 않거나 -----

10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 반영

○ 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 반영

○ 용어 통일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 및
알기 쉬운 법령 정비
기준 반영

○ 용어 통일 및 알기 쉬
운 법령 정비 기준 반
영

○ 띄어쓰기 오류 수정

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의뢰를 하여야 한다.

제54조(재검토기한) 관세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「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」 제14조제1항 -----

-----.

제54조(재검토기한) -----

----- 2022년 7월 1일 ----- 매 3년 -----
----- 6월 30일 -----
-----.

○ 재검토기한 재설정 및
띄어쓰기 오류 수정

[별표 12] 수출목록 변환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제35조의2제3항 관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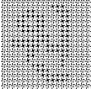
(1) 일반사항

가.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수출하려는 물품은 (간이)수출신고서 기재항목 중 아래 항목들을 해당 작성요령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. 다만, 아래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별표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.

- 「⑪구매자」 기재항목 중 구매자부호 항목은 생략하고 구매자명을 기재한다.
- 「⑫제출자」 기재항목은 제출자명, 사업자등록번호와 구분부호를 기재한다.
- 「⑬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(URL)」 기재항목은 수출물품이 실제 판매된 웹페이지 전체 주소를 기재한다.
- 「⑭제조사」 기재항목은 「란」 별로 기재하며 제조자명, 사업자등록번호와 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.
- 「⑮환급신청인」 기재항목은 「란」 별로 기재한다.
- 「⑯수출자구분」 기재항목은 「란」 별로 기재한다.
- 「⑰수량」 기재항목은 수량을 단위 EA(으)로 기재하고 수량이 없는 경우에는 중량을 단위 KG(으)로 기재한다.
- 「⑱단가」 기재항목은 미화(USD)로 기재한다.
- 「㉑금액」 기재항목은 미화(USD)로 기재한다.
- 「㉒순중량」 기재항목은 단위 KG(으)로만 기재한다.
- 「㉔수량」 기재항목은 단위 EA(으)로 기재하고 수량이 없는 경우 0을 기재한다.
- 「㉕조정금액」 기재항목은 할인받은 금액을 원화로 기재가능하다.
- 「㉗총중량」 기재항목은 수출신고서의 총중량을 단위 KG(으)로 기재한다.
- 「㉘총포장개수」 기재항목은 단위 EA(으)로 기재한다.
- 「㉙총조정금액」 기재항목은 할인받은 총금액을 원화로 기재가능하다.
- 「㉚결제금액」 기재항목은 실제 결제한 금액으로 (총신고가격+운임-총조정금액)을 기재한다.
- 「㉛주문번호」 기재항목은 필수항목으로 주문관련번호를 기재한다.
- 「㉜배송번호」 기재항목은 선택항목으로 배송번호를 기재한다.
- 「㉞운송인」 기재항목은 필수항목으로 배송을 담당할 특송업체 등을 기재한다.



(간이)수출신고필증(적재전, 을지)



※ 처리기간 : 즉시

①신고자 XXXXXXXXXXXXXXXX	③신고번호 99999-99-99999E	④세관.과 999-99	⑤신고일자 YYYY/MM/DD	⑥C/S구분 X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

품명 · 규격 (란번호/총란수: 999/999)

⑭제 조 자 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통관고유번호) XXXXXXXX-9-99-9-99-9	⑮환급신청인 X (1:수출대행자/수출화주, 2:제조자) 자동간이정액환급 XX
	⑯수출자 구분 X

⑰품 명 XX

⑱모델 · 규격	⑲수량(EA)	⑳단가(USD)	㉑금액(USD)
XXX XXX XXX XXX XXX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모델 ·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. </div> XXX XXX XXX XXX XXX	999,999,999,999	9,999,999,999.99	999,999,999.99

⑳세번부호 9999.99-9999	㉒순중량(KG) 999.999,999.999	㉔수량(EA)	9,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

㉕조정금액(W) 999,999,999	㉖신고가격(FOB)	\$999,999,999 ₩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품명 · 규격 (란번호/총란수: 999/999)

⑭제 조 자 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통관고유번호) XXXXXXXX-9-99-9-99-9	⑮환급신청인 X (1:수출대행자/수출화주, 2:제조자) 자동간이정액환급 XX
	⑯수출자 구분 X

⑰품 명 XX

⑱모델 · 규격	⑲수량(EA)	⑳단가(USD)	㉑금액(USD)
XXX XXX XXX XXX XXX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모델 ·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. </div> XXX XXX XXX XXX XXX	999,999,999,999	9,999,999,999.99	999,999,999.99

⑳세번부호 9999.99-9999	㉒순중량(KG) 999.999,999.999	㉔수량(EA)	9,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

㉕조정금액(W) 999,999,999	㉖신고가격(FOB)	\$999,999,999 ₩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품명 · 규격 (란번호/총란수: 999/999)

⑭제 조 자 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통관고유번호) XXXXXXXX-9-99-9-99-9	⑮환급신청인 X (1:수출대행자/수출화주, 2:제조자) 자동간이정액환급 XX
	⑯수출자 구분 X

⑰품 명 XX

⑱모델 · 규격	⑲수량(EA)	⑳단가(USD)	㉑금액(USD)
XXX XXX XXX XXX XXX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2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모델 ·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. </div> XXX XXX XXX XXX XXX	999,999,999,999	9,999,999,999.99	999,999,999.99

⑳세번부호 9999.99-9999	㉒순중량(KG) 999.999,999.999	㉔수량(EA)	9,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------

㉕조정금액(W) 999,999,999	㉖신고가격(FOB)	\$999,999,999 ₩999,999,999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발행번호 : 9999999999999999(YYYY.MM.DD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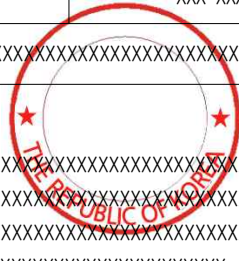
- (1)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관세법 제251조, 제277조) 또한 휴대택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초소,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(2)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탈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http://portal.customs.go.kr)



(간이)수출신고필증(수출이행, 감지)

※ 처리기간 : 즉시

①신고자 XXXXXXXXXXXXXXXXX		③신고번호 99999-99-99999E		④세관.과 999-99		⑤신고일자 YYYY/MM/DD		⑥C/S구분 X	
②수출대행자 XXXXXXXXXXXXXXXXXXXXXXXX (통관고유부호) XXXXXXX-9-99-9-99-9 수출화주 XXXXXXXXXXXXXXXXXXXXXXXX (통관고유부호) XXXXXXX-9-99-9-99-9 (주소) XXXXXXXXXXXXXXXXXXXXXXXX (대표자) XXXXXXXXXX (우편번호) XXX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사업자등록번호구분) XX				⑦거래구분 XX		⑧결제방법 XX			
				⑨목적국 XX		⑩운송형태 XX			
				⑪구 매 자 XXXXXXXXXXXXXXXXXXXXXXXX		⑫제 출 자 XXXXXXXXXXXXXXXXXXXXXX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			
				⑬판매사이트 웹페이지 주소(URL) XXXXXXXXXXXXXXXXXXXXXXXX XX					
품명 · 규격 (란번호/총란수: 999/999)									
⑭제 조 자 XXXXXXXXXXXXXXXXXXXXXXXX (사업자등록번호) 999-99-99999 (통관고유부호) XXXXXXX-9-99-9-99-9				⑮환급신청인 X (1:수출대행자/수출화주, 2:제조사) 자동간이정액환급 XX					
				⑯수출자 구분 X					
⑰품 명 XXXXXXXXXXXXXXXXXXXXXXXX									
⑱모델 · 규격				⑲수량(EA)		⑳단가(USD)		㉑금액(USD)	
XX XX XX XX XX XX XX XX XX XX				999,999,999,999		9,999,999,999.99		999,999,999.99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모델 ·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. </div>									
㉒세번부호 9999.99-9999		㉓순중량(KG) 999.999,999.999		㉔수량(EA) 9,999,999,999		㉕금액(USD) \$999,999,999 ₩999,999,999			
㉖조정금액(₩) 999,999,999		㉗신고가격(FOB) 999,999		㉘총신고가격(FOB) \$ 999,999,999,999 ₩ 999,999,999,999,999		㉙총중량(KG) 999,999,999			
㉚총중량(KG) 999,999,999		㉛총포장갯수(EA) 999,999		㉜총신고가격(FOB) \$ 999,999,999,999 ₩ 999,999,999,999,999		㉝운임(₩) 999,999,999			
㉞운임(₩) 999,999,999		㉟총조정금액(₩) 999,999,999		㊱결제금액 XXX-XXX-999,999,999,999,999,999		㊲주문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	
㊳주문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㊴배송번호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※신고인기재란 XX XX XX XX XX ㊵세관기재란 XX XX XX XX XX					
㊶운송인 XXXXXX		㊷적재의무기한 YYYY/MM//DD		㊸담당자 XXXXXX(XXXXXX)		㊹신고수리일자 YYYY/MM/DD			





SIMPLE EXPORT DECLARATION CERTIFICATE (AFTER LOADING, A)

※ Processing Period : Immediate

①Declarant XXXXXXXXXXXXXXXXXX		③Declaration Number 99999-99-999999E		④Customs.Division 999-99		⑤Declaration Date YYYY/MM/DD		⑥C/S Type X		
②Exporter XXXXXXXXXXXXXXXXXXXXXXXX (Clearance Code) XXXXXXXX-9-99-9-99-9 Seller XXXXXXXXXXXXXXXXXXXXXXXX (Clearance Code) XXXXXXXX-9-99-9-99-9 (Address) XXX (Name) XXXXXXXXXXXXX (Postal Code) XXXXX (Business License) 999-99-99999 (Business License Type) XX				⑦Transaction Type XX		⑧Payment Type XX				
				⑨Country of Destination XX		⑩Transportation Type XX				
				⑪Buyer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				
				⑫Submitter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(Business License) 999-99-99999						
				⑬E-commerce Website Address(URL) XXXXXXXXXXXXXXXXXXXXXXX XX						
Description (Line/Total Line: 999/999)										
⑭Manufacturer XXXXXXXXXXXXXXXXXXXXXXXX (Business License) 999-99-99999 (Clearance Code) XXXXXXXX-9-99-9-99-9				⑮Drawback Applicant X (1:Exporter/Seller, 2:Manufacturer) Auto Drawback XX						
				⑯Exporter Type X						
⑰Item Description XXXXXXXXXXXXXXXXXXXXXXXX										
⑱Model Standard XX XX XX XX XX XX XX XX XX				⑲Quantity(EA) 999,999,999.999		⑳Unit Value(USD) 9,999,999,999.99		㉑Value(USD) 999,999,999.99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inline-block;"> 모델 · 규격의 갯수 및 길이에 따라 세로길이 가변적. </div>										
㉒H.S. Code 9999.99-9999		㉓Net Weight(KG) 999,999,999.999		㉔Quantity(EA) 9,999,999,999						
㉕Adjustment Value(W) 999,999,999		㉖Declared Value(FOB) \$999,999,999 ₩999,999,999								
㉗Total Weight(KG) 999,999,999		㉘Total Package(EA) 999,999		㉙Total Delared Value (FOB) \$ 999,999,999,999 ₩ 999,999,999,999,999						
㉚Freight(W) 999,999,999		㉛Total Adjustment Value(W) 999,999,999		㉜Transaction Price XXX-XXX-999,999,999,999,999						
㉝Purchase Order No. 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		㉞Shipping No. XXXXXXXXXXXXXXXXXXXXXXXXXXXX						
※Declarant Statement XX XX XX XX				㉟Customs Statement XX XX XX XX						
㊱Transporters XXXXXX		㊲Term of Loading Obligation YYYY/MM//DD		㊳Person in Charge XXXXXX(XXXXXX)		㊴Date of Declaration Processing YYYY/MM/DD	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(검사대상)통관목록

대한민국세관
KOREA CUSTOMS SERVICE

세관/과

PAGE :

특송업체명

출항일시 :

항공편명

검사자 :

신고번호	HOUSE AWB No.	수출자 상호	품명 / 규격 / 수량		
반출사유	목적국	수취인 상호	포장개수(CT)	중량(Kg)	가격(FOBW)
거래코드(01:전자상거래, 02:기업견품, 99:기타)		사업자등록번호	세번부호(HSK 10단위)		

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(신청서)

처 리 기 간

* 접수번호 :

1일

수출 화 주	① 상 호		④ 전 화 번 호	
	② 대 표 자		⑤ 통관고유부호	
	③ 주 소		⑥ 사업장소재지	
적 재 물 품		⑦ H.S 번호(6단위)	⑧ 품 명	
⑨ 신 청 사 유		(예시) 유동성 액체로서 적재상태로 검량 통관키 위함.		
* 유효 기간		월 일	* 비 고	

위와 같이 「관세법」 제140조제6항과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2조제3항에 따라 수출신고수리전 적재허가를 신청합니다.

20 . . .

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
구비서류 : 없음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위와 같이 허가합니다.

20 . . .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* 표시란은 신청자가 기재하지 않음.

[별지 제11호서식]

대한민국 송품장 (제7조의2제1항 관련)

I. 일반사항

- 수출물품에 대한 구비요건, 원산지, 지식재산권(상표 등) 등은 송품장 기재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출화주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 결정되므로 수출화주는 송품장 기재에 정확성을 기해야 한다.
- 별지 제11-1호(대한민국송품장) 서식은 실제 무역업무 수행시 사용되는 것은 아니나 수출화주가 종이서식에 의한 송품장(COMMERCIAL INVOICE 등)으로 무역거래를 하는 경우 가급적 동 서식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.
 - 또한 동 서식은 별지 제11-2호(전자인보이스)를 출력할 때 사용한다.
- 별지 제11-2호(전자인보이스)는 송품장을 세관에 전자적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는 전자문서 서식이다.

II. 대한민국 송품장 서식 기재요령

8. Transport details / 국제운송과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항 기재

- ① Mode of transport : 운송방법(해상·항공·철도·트럭 등)
- ② Vessel name(or Flight No)/선박명(또는 항공편명)
- ③ Voyage No/항차번호(선박의 경우)
- ④ Departure date/출항일자
- ⑤ Place of loading/선적지
- ⑥ Place of discharge/ 양륙지
- ⑦ Place of delivery/물품 인도장소
- ⑧ Place of transhipment/환적지
- ⑨ Freight payment method / 운임지급방법(선불 또는 후불 여부)
 - * ② ③ ④ ⑤ ⑥ 및 ⑧은 임의기재사항으로서 선택적 기재

9.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 / 물품인도조건 및 대금지급조건 항목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 기재

- 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 / 무역거래조건 부호 및 지역명
예) "FOB", New York
- 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 / 대금지급 조건 기재
예) L/C Base, Payment within 15 days and 3% cash discount or 30 days net.

12. Total amount of price / 지급통화 부호 및 전체물품가격을 기재

[별지 제11-1호서식]

세관제출번호 관세상사1971015-I-07-12345 678	대한민국 세관 송품장(수출용) (KOREA CUSTOMS INVOICE)	(갑지) Page of			
1. Shipper(Exporter) / 수출자 상호 및 주소		2. Invoice No and Date / 송품장 번호 및 발행일자			
		3. Other references / 구매주문서 등 참조문서명 및 그 번호			
4. Consignee / 수하인 상호 및 주소		5. Buyer(if other than consignee) / 구매자 상호 및 주소(수하인과 다르면 기재)			
6. L/C No and Date / 신용장 번호 및 발행일자		7. Country of origin / 물품의 원산지 국가명			
8. Transport details / 운송내역		9. Terms of delivery and payment/인도 및 지급 조건			
Mode of transport/운송방법		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 /인코텀즈 값(무역거래조건 부호) 및 지역명			
Vessel name(or Flight No) /선박명(또는 항공편명)		Incoterms value			
Voyage No/항차번호		Location name			
Departure date/출항일자		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/대금지급 조건 및 사항			
Place of loading/선적지		Payment terms			
Place of discharge/ 양륙지		Payment conditions			
Place of delivery/인도장소					
Place of transhipment/환적지					
Freight payment Method /운입지급방법					
10. Specification of commodities(in code and/or in full) / 상품명세					
Line No /일련번호	Specification of commodities(General description and characters, I.e. grade, quality) / 상품명세	Packing No /포장번호	Quantity /수량	Unit price /단가	Amount of price /가격
11. Total weight / 전체 중량		12. Total amount of price/ 전체물품가격		13. Cost details / 비용내역	
Gross weight /총중량	Net weight /총순중량	Currency code /지급통화부호	Total amount /금액	Freight /운임	Insurance /보험료
14. Packing details / 포장내역					
Package code /포장형태부호		Package name /포장형태명		Total packages /전체 포장갯수	

[별지 제11-2호서식]

전자인보이스

항목 번호	항목명	TYPE	SIZE	조건	작성예	비고
8	Transport details[운송내역]					
	- Mode of transport(운송방법)	AN..	35	M	"By Vessel", "AIR"	선박(또는 항공기) 고유명칭 운항선사에서 부여한 번호 선박의 출항일
	- Vessel name(선박명·항공편명)	AN..	35	C	"Oriana"	
	- Voyage No(항차번호)	AN..	35	C	"9901", "9902"	
	- Departure date(출항일자)	AN..	8	C	"20070326"	
	- Place of loading(선적지)					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 코드 물품의 선적지(출발지)명
	· 선적지 코드	AN..	25	C	"JPYOK", "MYJHB"	
	· 선적지명	AN..	80	C	"Yokohama"	
	- Place of discharge(양륙지)					물품의 양륙지 코드 물품의 양륙지명
	· 양륙지 코드	AN..	25	C	"JPYOK", "MYJHB"	
	· 양륙지명	AN..	80	C	"Yokohama"	
	- Place of delivery(인도장소)					물품의 도착(인도)지 코드 물품의 도착(인도)지명
	· 인도장소 코드	AN..	25	M	"JPYOK", "MYJHB"	
	· 인도장소명	AN..	80	M	"Yokohama"	
- Place of transshipment(환적지)					물품의 환적지 코드 물품의 환적지명	
· 환적지 코드	AN..	25	C	"JPYOK", "MYJHB"		
· 환적지명	AN..	80	C	"Yokohama"		
- Freight payment Method(운임지급방법)	AN..	80	M	"Collect"	운임지급방법(선불/후불)	
9	Terms of delivery and payment[인도 및 지급 조건]					Buyer와 Seller 협의한 조건
	① Incoterms value and Location Name(무역거래 조건 부호 및 지역명)					
	- Incoterms value	AN..	35	M	"FOB"	사용자 정의 지급 조건
	- Location name	AN..	80	M	"New York"	
	② Payment terms and conditions(대금지급 조건 및 사정)					
- Payment terms	AN..	80	M			
- Payment conditions	AN..	80	C			
12	Total amount of price[전체 물품가격]					
	- Currency code(지급통화부호)	AN..	5	M		
	- Total amount(금액)	N..	35	M		



임시개청 신청(통보)서

문서번호 : XXXXX-XX-XXXXX

신청일자 : YYYY년MM월DD일

수신 : XX세관 XXXX과장

신청자 : (상호) XXXXXXXXXXX

(성명) XXXXXXX

제목 : 임시개청 신청(통보)

관세법 제321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75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통관 임시개청을 신청(통보)합니다.

다 음

1. 임시개청신청시간 : YYYY년MM월DD일 XX시 XX분부터
YYYY년MM월DD일 XX시 XX분까지

2. 임시개청사유 :

3. 수출예정건수 :

4. 임시개청신청 물품

① 수출신고번호	② 수출화주	③ 수출금액(US\$)	④ 포장개수	⑤ 총중량

※ 기재란의 해당 항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빈칸으로 둘 수 있음.

* 문서번호체계 : 신고인부호(5) + 연도(2) + 일련번호(5)

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(수리)서

대한민국세관
KOREA CUSTOMS SERVICE

세관/과		신고일자	
신고번호		신고인	
수출자상호		수출자 사업자등록번호	
수출자주소			
수취인상호		목적국	
수취인주소			
품명/규격			
포장개수(CT)		중(수)량	
가격		거래코드	
물품소재지			

위와 같이 「관세법」 제241조와 「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」 제37조의2에 따라 송품장에 의한 목록통관수출을 신고합니다.

구비서류 : 송품장

○ ○ 세 관 장 귀하

위와 같이 신고수리합니다.

20

○ ○ 세 관 장 직인

[별표] 수출신고서 작성요령

(1) 일반사항

자. 결제금액에 운임·보험료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운임·보험료 등을 수출자(제조자)가 구분하여야 하며 관세사등 신고인은 그 적정성을 심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

파. 통계부호의 추가, 삭제, 변경사항이 **통보**되었을 때에는 이를 전직원 및 관세사에게 숙지시키고 관계 자료를 보완하여 활용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.

(2) 품명·규격 기재에 관한 사항

다. 신고인의 권한과 책임

- 신고인은 송품장 등에 기재한 품명·규격이 이 요령에서 정하는 표기원칙과 다르게 작성된 때에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하여 수출신고서에 표기하여야 한다.
- 관세사등은 통관을 의뢰하는 수출업자에게 수출요건 확인서류, 송품장 등을 작성하는 때에는 이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명·규격을 작성하도록 전문지식을 제공하여야 한다.

(3) 제7조의3에서 정한 보세구역 등 반입 후 수출신고에 관한 사항

가. 일반사항

- 「㉑물품소재지」는,
 - (우편번호)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
 - (장치장소) 주소(도로명까지) 및 보세구역명 반드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
 - (장치장부호) 해당 보세구역부호 반드시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
 - (반입번호) 해당 보세구역에 반입시 형성된 반입번호(반입계 정보) 반드시 기재
- 본 항목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1)일반사항에 따른다.

(5) 수출신고서 세부작성 요령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EDI	작성요령	작성예
②수출대행자	AN..	28	M	공통	○ 수출대행자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. ※ 수출대행자가 다수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신고할 수 없으므로 수출대행자별로 분리하여 신고	- (주)다파라인터내셔널
- 수출화주	AN..	28	M	공통	○ 수출화주의 상호를 기재	- (주)초일류상사
- (소재지)	AN	5	M	공통	○ 수출화주 소재지의 우편번호 앞 5자리 번호를 기재.	- 13457
③제조자	AN..	28	M	공통	○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한 자의 상호를 기재	- (주)메이저상사
제조장소	AN	5	M	공통	○ 수출물품 제조장소(공장)의 우편번호 앞 5자리 번호를	- 13457

항 목	TYPE	SIZE	조건	서류 EDI	작성요령	작성예
					기재. 다만, 제조자가 미상인 경우에는 수출화주 소재지 우편번호 5자리 기재	
㉑물품소재지	AN	5	M	공통	○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의 우편번호 5자리를 기재	-13345
- 장치장소	AN..	40	M	공통	○ 수출물품이 장치되어 있는 소재지 기본주소(도로명까지)를 먼저 기재하고 그 다음에 상세주소와 소재지 명칭(업체 상호)을 기재 - 물품소재지가 보세구역일 경우 기본주소(도로명까지) 및 보세구역명 기재(통계부호표 참조) - 보세구역이 아닐 경우 주소와 회사명 순으로 기재 ※ 동일세관, 출장소 관할지 내 물품이 2곳 이상 있을 경우 1건으로 신고 가능(대표소재지 기재)	- 서울 강동 명일대로 123 한진보세장치장
㉒원산지						
-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	AN	1	C	공통	○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표시 - Y : 원산지증명서 발급 - N : 원산지증명서 미발급 - (삭제) ※ 수출 이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예정인 경우에도 기재	- Y - N
- 발급협정명	AN	10	C	공통	○ 발급(예정)된 원산지증명서로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 선택(통계부호표 참조) - 원산지증명서 발급여부가 'Y'인 경우만 선택 - ㉓ 목적국이 FTA 협정국가인 경우에만 선택 - 일반특혜 적용 시 선택하지 않음	- RCEP
㉓신고인기재란	AN..	500	C	공통	○ 관세사등 신고인이 수출신고시 세관에 제공하는 정보 기재 -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건은 보세구역 운영인, 컨테이너 작업업체 연락처 등 기재	- 수출자 : 제조/섬유, 의류